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837 호 2013. 8. 26(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38호[하천(소하천) 접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39호[도로명주소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134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6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743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751호[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15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138호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6항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소하천) 점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한전 부산경남개발처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21																				
점용위치	대안동 1110번지외 6필지	하천명	대안천, 우유천																		
점용목적	동울산변전소 공사현장 진입로 (가도) 확보	점용면적 (m ²)	구분	일시	영구																
			계	6,773	-																
			지방하천	2,476	-																
			소하천	4,297	-																
점용기간	○ 일 시	2013. 8. 21. ~ 2014. 11. 31																			
	○ 영 구	-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점용 및 토지형질변경 (굴착, 절토 등)	하천공사 목적	동울산변전소 공사현장 진입로 (가도) 확보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점용자와 동일	공사기간	2013. 8. 21 ~ 2014. 11. 31																		
공사위치	대안동 110번지외 6필지																				
토지 소재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소재지</th> <th rowspan="2">지번</th> <th rowspan="2">지목</th> <th rowspan="2">면적(m²)</th> <th rowspan="2">소유자</th> </tr> <tr> <th>구,군</th> <th>동,리</th> </tr> </thead> <tbody> <tr> <td>북구</td> <td>내안동</td> <td>1066-1번지</td> <td>천</td> <td>472 2,376</td> <td>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td> <td>산346-1</td> <td>천</td> <td>1,376 -</td> <td>농림축산식품부</td> </tr> </tbody> </tabl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구,군	동,리	북구	내안동	1066-1번지	천	472 2,376	국토교통부			산346-1	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구,군	동,리																				
북구	내안동	1066-1번지	천	472 2,376	국토교통부																
		산346-1	천	1,376 -	농림축산식품부																

구,군	동,리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m ²)		소유자
		면	리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북구	대안동	1065번지		천	280	-	-	국토교통부
		1063-2번지		천	200	-	-	국토교통부
		276-14번지		천	44			국토교통부
		276-17번지		천	104			국토교통부
		1110번지		천			1,921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39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7길 32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8.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수.번	증정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시유 리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친정명촌지구 38B 5L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17길 32(진정동)	2013-08-26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2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357-25	울산광역시 북구 어진로 41-12(상안동)	2013-08-26	이 지역의 옛지명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8-03-11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72-9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58(호계동)	2013-08-26	호계동에 소재하는 도로로 법정동인 호계동의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4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201-5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995(무룡동)	2013-08-26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5	울산광역시 북구 청평동 969-8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138-1(청평동)	2013-08-26	호계동에 소재하는 도로로 법정동인 호계동의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6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38-40	울산광역시 북구 치전1길 19(양정동)	2013-08-26	북쪽과 서해방의 산선들이 선단을 지어 양곡과 소금을 매매하던 곳으로 이때부터 치전이라 불리웠고 놀은 곳에 있는 나리마을이라는 뜻으로 옛지명을 그대로 살려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1-05	지번정정
7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46-1, 740-1, 750-11, 750-12, 750-18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46(효문동)	2013-08-26	효자송도라는 인물의 역사적 유래를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지번정정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4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 25-4외 4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8.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 25-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35	2013-08-26	건물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5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867	2013-08-26	건물멸실	
3	울산광역시 북구 성내4길 45-3	울산광역시 북구 엠포동 1000-12, 1000-13	2013-08-26	건물멸실	
4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18-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6-3	2013-08-26	건물멸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심청골길 2-20	울산광역시 북구 엠포동 28	2013-08-26	건물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7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08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3.05.06)으로 면접시험 기준을 법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 잊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민간전문가의 면접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면접위원에 포함
- 동일직렬 타 직류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도 “조경기능사” 추가

2. 주요내용

○ ‘면접시험기준’ 조항 삭제

- ‘면접시험기준’을 인사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위원 위촉관련 제도 개선

- 잊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민간전문가의 면접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고려
 - (현행) ↳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 5명 이상 위촉
 -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면접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
 - (개정) ↳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 2명 이상 위촉
 - ↳ 면접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위촉

○ 조경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자격증에 '조경기능사' 추가

-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직류에는 「기능사 자격증」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경' 직류에는 기능사 자격증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동일직렬에 타 직류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2013. 05. 09.)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09월 0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6. 제출처

-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총무과
- 나. 전화번호 : 052-241-7212, 팩스번호 : 052-241-7209

7. 참고사항

규칙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 관련)

가. 6급 이하 및 기능직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6급	산림 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성,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 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보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도양생기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 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시험위원) ① (생략) 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 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u> ② _____ _____ ----- <u>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u>
제13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 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 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 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적 사육직렬, 조무 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생략) 3. (생략)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 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 ----- ----- 1. ----- : 기능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생략) 3. (생략)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제13조(면접시험기준) (삭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 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 (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현 행

개 정 안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 비 고 : 제자문 자치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L1 자격
인정되어 자진증으로 기상내선 자격증으로 인정된다.

제 37 조 : 제 7조에 정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이첩되는 자격증은 가산비율 적용으로 이첩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751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을 제한하고자 공고하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 8. 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써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 포함)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매월2일)

2.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행정절차법」 제21조 ~ 제47조(처분의 사전통지 ~ 준용)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3. 8. 21. ~ 9. 13.(23일간)

4.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현황(2013. 8. 21. 현재)

구 분	계	홈플러스	메가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탑마트	홈플러스 스토어 프레스	GS 슈퍼	롯데슈퍼
대 형 마 트	4	1	1	1	1				
준대규모점포(SSM)	7					2	3	1	1

5. 의견제출 기간 : 2013. 8. 21. ~ 9. 13일까지(공휴일 포함)

6. 의견제출

-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www.bukgu.ulsan.kr)홈페이지, 구보 등
- 접수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 제출기간 : '13. 9. 13.(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인터넷, 우편 등(우편은 9. 13일 도착분 까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 주 소 : (우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전화/팩스 : 052)241-7702 / 052)241-7709

【붙임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의견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제출자	주소		
예고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